조선산업 지원 특별법안 (서일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9293

발의연월일: 2025. 3. 24.

발 의 자:서일준·임종득·이종배

고동진 • 이헌승 • 강승규

이인선 · 이상휘 · 김장겸

권성동 · 강명구 · 윤영석

윤한홍 · 정점식 · 박형수

송언석 • 나경원 • 김정재

김상훈 · 최형두 의원

(20인)

제안이유

조선산업은 전·후방 산업의 연관효과 및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으로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수출 주력산업이나, 최근 세계시장 수주점유율이 20% 이하로 하락하면서 국내 조선산업 위기 논의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임.

특히, 중국 조선산업의 급격한 발전으로 중국과의 세계시장 수주 점유율 격차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친환경 선박 수요 확대에 대응하여 생산시설 및 기술개발 등에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면서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음.

이에 국내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조선산업 지원에 관한

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조선산업 진흥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조 선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이 법은 조선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(안 제1조).
- 나.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선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체계적·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조선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함(안 제5조).
- 다.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선기술로서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에 따라 신기술로 인증을 받은 기술의 사업화 등을 지원할 수 있음(안 제7조).
- 라.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선기술 관련 정보를 체계적·종합적으로 관리·보급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(안 제8조).
- 마.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선산업 분야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표준의 제정 및 인증 지원, 조선표준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시책 마련 등을 하도록 함(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).
- 바.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, 조선산업 분야 국제협력과 조선기업의 해외

진출 촉진 등을 추진하여야 함(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).

사. 조선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「근로기준법」의 규정에 도 불구하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주(週)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 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1 조).

조선산업 지원 특별법안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법은 조선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조선산업"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개발
 •제조·가공·조립·재생·개조·수리하거나 이와 관련된 서비스
 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.
 - 가. 「선박법」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
 - 나. 항해나 자원의 탐사·개발 등을 위하여 해양에 설치된 이동식
 - •고정식 기기 및 구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 - 다. 가목 및 나목과 관련된 부속기기류 또는 관련 소재류
- 2. "조선기술"이란 조선산업과 관련되는 기초과학 및 응용과학 기술 을 말한다.
- 3. "조선기업"이란 조선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.

제3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는 조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종합적인

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조선산업을 기반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
제4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조선산업의 진흥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2장 조선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등

- 제5조(조선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산업통상자 원부장관은 조선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체계적·효율적으로 추 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조선산업 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(이하 "종합계획"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 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-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조선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
 - 2. 조선산업의 부문별 진흥 시책에 관한 사항
 - 3. 조선기술의 개발·보급·확산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
 - 4. 조선산업 분야 표준화 촉진에 관한 사항

- 5.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
- 6. 조선기업의 창업 및 성장 지원에 관한 사항
- 7. 조선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
- 8.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
- 9. 그 밖에 조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, 조선산업 관련 연구기관·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있다.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④ 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·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6조(통계의 작성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수립·시행을 위하여 통계청장과 협의하여 조선산업에 대한 통계를 작성·관리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통계는 「통계법」을 준용하여 작성하되, 조사대상 과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.

제3장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 진흥 기반 조성

- 제7조(신기술의 사업화 지원 등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선기술로 서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15조의2에 따라 신기술로 인증을 받은 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 -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아 신기술을 사업화한 결과를 사용·양도·대여 또는 수출하여 매출이 발생한 사람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.
 - ③ 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납부 기준·절차, 용도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8조(조선기술에 관한 정보의 관리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조선기술 관련 정보를 체계적·종합적으로 관리·보급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 -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선기술 관련 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, 국·공립 연구기관 등 관련 기관의 장에게 조선기술에 관한 자료의 제출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 -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선기술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보급을 위한 사업을 하여야 한다.
 - ④ 제3항에 따라 보급의 대상이 되는 조선기술 관련 정보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9조(기술예고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선산업의 장기적 발전방

향과 조선기술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조선기술에 관한 새로운 기술을 예고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예고의 내용·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.
- 제10조(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조선기술 관련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 -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관련 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고,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- 제11조(표준화의 추진)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.
 - 1. 조선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
 - 2. 조선산업 관련 제품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
 - 3. 조선산업 관련 서비스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
 - 4. 그 밖에 조선산업 분야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제12조(표준의 제정 및 인증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조선기술, 조선산업 관련 제품, 조선산업 관련 서비스등(이하 "조선기술등"이라 한다)에 관한 표준(이하 "조선표준"이라한다)을 「산업표준화법」 제5조제1항에 따른 산업표준으로 정하여고시하고, 조선기업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(이하 "공공기관"이라한다) 및 연구기관 등에 그 사용

- 을 권고할 수 있다.
- ② 조선표준에 적합한 조선기술등을 개발 및 공급하는 자는 인증기 관의 인증을 받아 조선기술등이 조선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 는 표시를 할 수 있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조선표준의 제정과 제2항에 따른 인증, 인증표시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산업표준화법」에 따른다.
- 제13조(조선기술등의 인증 지원)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선기업, 공 공기관 및 연구기관 등이 개발한 조선기술등이 신속하게 그 성능을 인증 받아 국내외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 여야 한다.
- 제14조(조선표준의 국제표준화 촉진) 정부는 조선표준과 관련된 국제 표준기구 또는 국제표준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·강화하고 국내 조 선표준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야 한다.
- 제15조(전문인력의 양성)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 - 1. 전문인력의 수요 실태 파악 및 중·장기 수급 전망 수립
 - 2.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설립ㆍ지원
 - 3.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
 - 4. 조선기술 관련 자격제도의 정착 및 전문인력 수급 지원

- 5. 각급 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조선산업 및 조선 기술 관련 교육의 지원
- 6.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항
- 제16조(조선산업의 국제협력 추진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여 야 한다.
 -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선산업 분야의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 -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선산업 또는 조선기술과 관련된 민간부문에서의 국제협력을 지원할 수 있다.
- 제17조(조선기업의 해외진출 촉진)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 조선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하여 기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- 제18조(기술지도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선산업 관련 제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선기업에 기 술의 표준화, 기술훈련, 기술정보의 제공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에 관하여 기술지도를 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지도의 대상, 내용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9조(조선산업단지의 조성 등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조선산업

- 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산업입지의 조성 및 공급과 조선산업 기반시설의 지원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, 민간이 공동으로 조선산업 단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조선산업단지의 조성에 관하여는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조선산업단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20조(세제 및 금융 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조선산업의 경 쟁력 강화를 위하여 「조세특례제한법」,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.
 - ② 「신용보증기금법」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및 「기술보증기금법」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은 조선기업에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거나 보증조건 등을 우대할 수 있다.
- 제21조(「근로기준법」 적용 특례) 조선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「근로기준법」 제53조 및 제54조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주(週) 12시간을 초과하 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4장 보칙 및 벌칙

제22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

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

-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선산업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- 제23조(비밀 유지의 의무) 제22조제2항에 따라 업무의 위탁을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 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24조(벌칙) 제23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